

# 의안 검토 보고서

1. 발의 또는 제출자 : 대전광역시장
2. 건 명 :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3. 안 건 요 지 : 별 첨
4. 검 토 의 견 : 별 첨

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8년 1월 24일

행 정 자 치 위 원 회

전문위원 박 춘 용

#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본 조례 안은 2008년 1월 11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1. 제안이유

고액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 징수할 수 있는 지난연도분 시세 체납액 징수기준을 1백만원 이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지난연도분 체납액 중 납세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1백만원 이상의 시세 체납액을 대전광역시장이 징수하도록 기준을 조정함(안 제7조).

## 3. 검토의견

### ○ 본 개정 조례 안은

지방세수 증대를 위하여 시세 체납액 중 기존 3백만원 이상에서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장이 징수토록

기준을 조정코자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다만, 징수기준 조정에 따라 작년 말 기준 체납건수가 894건에서 1,99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므로 징수인력 확보 등 징수방안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